〈별표 1〉〈개정 2008.06.23, 2008.09.01, 2009.11.18, 2010.10.4, 2011.3.1, 2011.7.4, 2011.12.2, 2012.10.09, 2013.01.02., 2013.10.11., 2016.02.12., 2017.12.21., 2018.09.17〉

대학원 장학금종류 및 지급기준

장학금 종류	구분	수 혜 자 격		지급액
학술활동 <신설>	전체대학원	학술지 게재	.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이상, SSCI, A&HCI 등 국제(공인) 학술지에 논문을 최초 게재한 자 중에서 주임교수가 추천한 자(공동 게재한 경우 지급액은 1/n으로 한다)	50만원
			.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이상, SSCI A&HCI 등 국제(공인) 학술지에 논문을 2회 이상 게재한 자 중에서 주임교수가 추천한 자(공동 게재한 경우 지급액은 1/n으로 한다)	100만원
		논문 발표	. 국내·외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한 자 중에서 주임교수가 추천한 자(소속 학과(전공) 관련 학술대회에 한하며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함. 공동 게재한 경우 지급액은 1/n으로 한다)	30만원
본교 출신	전체대학원	. 본교 출신자(학부,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강남대학교 총장명의 학위취득(예정)자)		입학금전액, 수업료의 40%
공무원·교사·군인·교직원	전체대학원	. 현직공무원, 교사, 군.경찰로 재직 중인 자 - 교사의 범위: 자격증 소지자로 초.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,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,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의한 보육시설에 교사로 재직 중인 자 .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		수업료의 40%
군위탁생	전체대학원	. 군위탁생으로 입학한 자		수업료의 50%
목회자	전체대학원	. 목사, 전도사, 파송선교사로 재직 중인 자		수업료의 40%
사회복지사	전체대학원	. 사회복지관련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 중인 자로 장학금 신청일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		수업료의 40%
언어재활사	전체대학원	. 언어재활사 자격증 소지자		수업료의 30%
공인중개사	전체대학원	.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		수업료의 30%
보건의료기관재직자	전체대학원	. 보건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 중인 자		수업료의 30%
평생교육기관재직자	특수대학원	. 평생교육기관에 재직 중인 자		수업료의 30%
산업체근무자	특수대학원	. 산업체에 근로자로 재직 중인 자, 사업주 포함		수업료의 30%
관.학협약기관	전체대학원	. 관.학 협약을 체결한 기관에 재직 중인 자		수업료의 40%
교육 및 학술교류 협약기관	전체대학원	. 교육 및 학술교류 협약을 체결한 기관 졸업자 . 산.학 협약기관에 재직 중인 자		수업료의 30%
본교 교직원 및 가족	특수대학원	. 본교 교직원 및 강남학원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		수업료의 50%
	전체대학원	. 본교 교직원 및 강남학원 임직원 직계자녀와 배우자		
가 족	전체대학원	. 가족(존.비속. 형제, 자매) 2인 이상 본 대학원에 동시에 등록한 경우 원생 1인에게 지급		수업료의 40%
외국인 학생	전체대학원	. 외국인(해외교포 포함)으로 본교 출신자.		입학금 전액, 수업료의 40% 및 기숙사비
		. 외국인(해외교포 포함)으로 본 대학원에 입학(예정)자		수업료의 40% 및 기숙사비
근로조교	전체대학원	. 교내 각 단과대학, 연구소 및 부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		수업료의 40%
국가고시	전체대학원	. 재학 중 국가고시(사법, 행정, 입법, 기술) 및 공인회계사 시험합격자 (단, 1차 합격자는 유효기간동안, 최종합격자는 졸업 시까지 지급)		수업료 전액
		. 입학 전 국가고시(사법, 행정, 외무, 입법, 기술) 및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, 세무사, 법무사, 건축사, 의사, 변리사, 기술사,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		수업료의 40%
봉 사	전체대학원	학술	.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등재후보 이상의 전문학회 임원 및 간사로 학회활동에 기여하고 있는자 중 주임교수나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	수업료의 20%
		사회봉사	. 정부기관, 학교, 종교기관, 법인 이상의 사회단체 등의 기관에서 4개월 60시간(월평균 15시간 이상) 이상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한 자 중 주임교수 혹은 대학원장이 봉사활동이 학생의 학업 내용과 관련 되었다고 판단되어 추천이 된 자	수업료의 20%
		학생활동	. 대학원 원우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(회장, 부회장, 총무 중 1명)	수업료의 35%
공 로	전체대학원	입상	. 4년제 대학, 정부, 전문학회가 개최한 대회에서 입상한 자	수업료의 20%
		표창	. 대학 총장, 도 및 시.군구 지방자치단체장, 중앙행정부처의 장에 의해 표창을 수여 받은 자	
		기부금	. 1,000만원 이상의 대학발전기금을 제공한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자손	
		기타	. 대학원장이나 총장에 의해 본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추천된 자	
특 별	전체대학원	. 총장 또는 대학원장이 특별히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		일정액
외 부	전체대학원	. 외부 독지가나 단체에서 장학금을 기탁한 목적에 따라 선발된 자		일정액

※ 대학원장학금지급에 관한규정 제5조(선발기준) ②항 2호 장학생은 직전학기에 과목낙제(선이수과목 포함)없이 6학점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3.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. 다만, 박사과정 5, 6학기 차, 특별장학금, 외부장학금은 예외(성적장학금은 해당 없음)로 한다.